#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

(송영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770 발의년월일 : 2020. 8. 28. 발 의 자 : 송영헌 의원

강민구 의원

강성환 의원 김원규 의원

김태원 의원

김혜정 의원

배지숙 의원

이진런 의원

정천락 의원 홍인표 의원

## 1. 제안 이유

O 대구광역시 학생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부 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교복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교복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교복구입비 지원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안 5조)

###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복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학교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구광역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한다.
  -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 3. "교복구입비"란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교복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대구광역시장과 행정적·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복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① 교복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2. 다른 시·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로 전·입학하거나 편입 학한 학생
  -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감에게 교복구입비를 신청하고. 교육감은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학교에 교부한다.
  - ③ 학교장은 학교주관 구매 절차에 따라 구매한 교복을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학생에게 현물로 지원한다.
  - ④ 그 밖에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 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 1. 제4조를 위반하여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붙임1〉

#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제34조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교육기본법」

-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사회보장기본법」

-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조달방 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붙임 2〉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안 제4조(지원대상) 및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1학년도부터 대구광역시 관내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교복 지원(연도별 평균 40,392명/중 20,430명, 고 19,962명) ※ 다른시·도 및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로 전학 및 편입하는 학생은 산정에서 제외함
- 1인당 교복비 지원 단가(동·하복): 30만원 적용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 · · · · · · · · · · · · · · · · · ·	<u> </u>		
구분	구분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재정 지출		• 1	중(1학년)	20,461명	19,338명	20,516명	20,607명	21,228명	102,150명
			고(1학년)	19,461명	19,344명	21,206명	20,461명	19,338명	99,810명
		2	소요액	11,976	11,604	12,516	12,320	12,169	60,585
재정 수입	· I			해당사항 없음					
총 비용			11,976	11,604	12,516	12,320	12,169	60,585	

###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재원조달 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자 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976	11,604	12,516	12,320	12,169	60,585

- ※ 단. 자치단체와의 재원분담 협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으로 일부 재원이 조달될 수 있음
- 지원대상 인원 산정은 2020.4.1.교육통계자료 기준으로 함
- 물가상승률 배제

## 5. 부대의견

- 없음

## 〈붙임 3〉

# 교복 지원 관련 현황

## □ 타 시·도 교육청 조례 제정 및 지원 현황

- 0 - 1 m	조례 제정	II.	, 11 -		
교육청명	(공포일자)	시행 시기	지원대상	지원 방법	비고
서울	×	-	_	_	저소득층 지원
부산	'18.11.14.	2019년	중1	현물	
인천	'18.10.01.	2019년	중1, 고1	현물	
광주	×	_	_	_	저소득층 지원
대전	'19.02.15.	2019년	중1, 고1	현물	
울산	'19.11.07.	2020년	중1, 고1	현물	
세종	'18.12.31. (전부개정)	2019년	중1, 고1	현물	
경기	'18.10.02.	2019년(중1) 2020년(고1)	중1, 고1	현물	
강원	'19.06.07.	2020년	중1, 고1	현물	
충북	'20.04.10.	2021년	중1, 고1	현물	지원 예정
충남	'18.10.30.	2019년	중1	현물	
전북	'18.11.16.	2019년	중1, 고1	현물	
전남	'18.12.20.	2019년(중1) 2020년(고1)	중1, 고1	현물	
경북	조례 준비중	_	_	_	상임위 계류
경남	'19.06.07.	2020년(중1) 2021년(고1)	중1, 고1	현금	
제주	'19.04.10.	2019년(중1) 2020년(고1)	중1, 고1	현물	

# □ 관내 중·고등학교 교복 착용 및 구매 현황

				シーフコール	
설립유형	학교급	총 학교 수(개)	교복착용 학교 수	학교주관구매 실시 학교 수(개)	
	중	90	89	89	
국공립	고	44	40	40	
	소계	134	129	129	
	중	34	33	22	
사립	고	49	48	20	
	소계	83	81	42	
きァ	1	217	210	171	

※ 교복 미착용 학교 : 중 2교(한울안중, 체육중), 고 5교(체육고, 대구외고, 과학고, 일과학고, 달구벌고)